

『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3월 25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3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4월 3일

제1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이 수 영

나. 제안이유

- 행정자치부의 국민중심 민원서비스 확대와 투명한 민원수수료 납부를 위한 종이증지 사용폐지 및 수수료 운영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하고
- 전자인증요금계기 사용 등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민원 편의 제공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「구미시 수입증지 조례」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
-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
 - 증지의 규격 및 모양(안 제4조).
 - 계기관리 책임공무원 지정 수입금 일일결산 결산자료 3년간 보존(안 제6조).

- 수입금을 전자화폐, 신용카드 등으로 납입가능토록 규정(안 제7조).
- 수입증지의 환매 청구는 가능토록 규정(안 제8조).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, 「경상북도 수입증지 조례」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조례안은

행정자치부의 국민중심 민원서비스 확대와 투명한 민원수수료 납부를 위해 종이 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하고 전자 수입증지를 사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에 따른 증지의 발행, 판매인 지정, 취소,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, 증지 취급, 판매인 수수료, 증지의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
-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

본 개정조례안은

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수수료 납부의 투명성과 업무효율성 제고, 국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현금처럼 취급해 온 종이 수입증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전자 수입증지 사용을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